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 제24조」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「동법시행령 제36조」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대상자

연번	대상자 성명	생년월일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세대주 성명	공고사유
1	홍서*	2008. 10. 15.	2025. 11. 1.~ 2026. 10. 31.	홍성*	폐문부재
2	송예*	2008. 10. 05.	2025. 11. 1.~ 2026. 10. 31.	김경*	폐문부재
3	송예*	2008. 10. 10.	2025. 11. 1.~ 2026. 10. 31.	송정*	폐문부재
4	임윤*	2008. 10. 13.	2025. 11. 1.~ 2026. 10. 31.	임형*	폐문부재
5	정소*	2008. 10. 28.	2025. 11. 1.~ 2026. 10. 31.	정대*	폐문부재
6	박주*	2008. 10. 07.	2025. 11. 1.~ 2026. 10. 31.	박성*	폐문부재
7	장지*	2008. 10. 18.	2025. 11. 1.~ 2026. 10. 31.	장예*	폐문부재
8	김민*	2008. 10. 20.	2025. 11. 1.~ 2026. 10. 31.	김명*	폐문부재
9	최보*	2008. 10. 09.	2025. 11. 1.~ 2026. 10. 31.	최창*	폐문부재

※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담당자 : 정경호 문의전화 : 031-5189-7216)

2025년 10월 20일

남 양 읍 장 인 